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2006. 6. 30까지 한시적으로 시범운영 실시하는 사회복지사무소의 직제 신설에 따른 소관업무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으로 배정하므로서 효과적이고 내실있는 의정업무의 편의를 도모하고자함.

2. 주요골자

사회복지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으로 배정 (안 제3조 제2항 3호 “나목” 신설)

3. 관계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03조

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 제6조

다.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6조 및 제6조의 2

4. 검토의견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제6조 및 제6조의 2에 의거 직제 신설된 사회복지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부산시사하구의회의위원회조례 제3조(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 제2항에 의한 상임위원회 배정을 당초 사회복지업무 소관 상임위원 사회도시위원회에 배정함으로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의정업무 수행이 원활하다고 판단되므로 개정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